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05.1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호  
개정 2009.11.05.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  
개정 2010.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호  
개정 2011.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3호  
개정 2013.12.30.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3호  
개정 2016.01.2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1호  
개정 2016.08.1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5호  
개정 2016.12.28.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7호  
개정 2018.12.05.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2호  
개정 2020.12.22.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4호  
개정 2021.12.21.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7호  
개정 2022.12.29.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9호  
개정 2024.02.06.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평가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및 사외이사로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5.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방송평가위원회 직무)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제7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방송평가위원회 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방송평가지원단 구성·운영)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의 내용영역, 편성영역 및 운영영역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방송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행정,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3.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편성 및 운영평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④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 청취)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대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대상)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 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평가유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
2.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군의 당해 방송분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 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①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제7호, 2008. 5. 19.>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실시하는 2008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 칙<제14호, 2009. 11. 5.>

이 공고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2010. 12. 30.>**

이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2년도에 실시하는 2011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의 적용)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3년도에 실시하는 2012년도 방송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단, ‘디지털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2014년도에 실시하는 2013년도 방송평가 분까지 적용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도에 실시하는 2015년도 방송평가 분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33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개정 규칙 제5조 제4호 및 제5호,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새롭게 방송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로부터 적용하고, 별표 중 개정 사항은 2015년도에 실시하는 2014년도 방송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원 임기의 적용) 제3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방송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41호, 2016.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2월 1일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5호, 2016.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7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7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도 방송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4호, 2020. 12.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2년에 실시하는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7호, 2021. 12. 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호, 2022. 12. 29.>**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1호, 2024. 2. 6.>**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5년에 실시하는 2024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중앙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700점)

① 내용영역(245점)

평가항목	배점 (245)	평가척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40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KBS, MBC, SBS)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다양성, 창의성)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5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5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여부, 결과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3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95점)

평가항목	배점 (295)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55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평가항목	배점 (295)	평가척도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50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보도 40%, 오락 60%) 편성 비율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25	-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 평가대상 :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0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10 (가점)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5 (가점)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 ③ 운영영역(160점)

평가항목	배점 (160)	평가척도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5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업체 운영 등 평가 ※ 평가대상 : KBS, MBC, SBS, EBS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평가	10	-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담당부서 지정 및 공지 등 평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10 (가점)	-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등 평가 -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li> <li>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li> </ul>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인 과징금 부과시 15점/ 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2.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지역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 ① 내용영역(155점)

평가항목	배점 (155)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3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4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② 편성영역(295점)

평가항목	배점 (295)	평가척도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및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70	-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 평가대상 : KBS-1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0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③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 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항목	평가척도
	<p>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p>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p>	<p>-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p>-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3.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중앙/지역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50점)

- 적용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1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li> <li>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0	-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20	-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5. 위성방송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4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100점)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척도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li> <li>-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li> </ul>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 ① 내용영역(215점)

평가항목	배점 (215)	평가척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30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다양성, 창의성) 평가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5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0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 여부, 결과 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3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② 편성영역(230점)

평가항목	배점 (230)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45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40	- 방송분야(보도 40%·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50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평가항목	배점 (230)	평가척도
평가		/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10 (가점)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5 (가점)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 ③ 운영영역(155점)

평가항목	배점 (155)	평가척도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5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평가	10	-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등 평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10 (가점)	-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등 평가 -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p>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p>-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p>
<p>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p>	<p>-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p>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p>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p>	<p>-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p>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350점)

평가항목	배점 (350)	평가척도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7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등을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40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0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10 (가점)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5 (가점)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 ② 운영영역(150점)

평가항목	배점 (15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1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평가항목	평가척도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8.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평분야)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자체심의 및 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6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25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보고서 등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5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② 운영영역(300점)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2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300)	평가척도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30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결과 등 평가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	30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30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 등을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허위·과장 광고(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와 제2장(허위·과장 광고 관련 제외), 제3장, 제4장, 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허위·과장광고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li> <li>-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li> </ul>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V/라디오방송)

###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00점)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척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종합 평가	30	-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2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 실적의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5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 ② 운영영역(200점)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3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평가항목	배점 (200)	평가척도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